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137호

20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공고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「2023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지원」 사업 내 로컬브랜드 창출과제 지원에 참여할 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년 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본 공고는 「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」의 3가지 세부 사업 중^{*} 하나로 반드시 세부 사업 중 **1개 사업만 신청·접수**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요건 검토 과정에서 **중복 신청한 사업 모두 탈락**할 수 있습니다.

- * ① 개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/② 로컬크리에이터 간 협업/③ 로컬브랜드 창출
- ※ 본 사업은 **로컬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**으로, 하단의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에 **해당하는지 확인 후 지원**하시기 바랍니다.

[참고]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

- ◈ 정의 : '지역의 자연·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'
 -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'지역가치 창업가'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
 - 7대① 지역가치② 로컬푸드③ 지역기반제조④ 지역특화관광유형⑤ 거점브랜드⑥ 디지털문화체험⑦ 자연친화활동
 - *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
 -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
 - 지역의 유·무형 자원 (역사전통, 문화예술, 자연생태, 생활문화, 지역특산물 등)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
 -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
 -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
 -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
 -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, 지역 내 고용창출,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

1 모집개요

□ **사업목적** :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,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**지역 정체성**을 골목길에 담아 **골목상권**을 **브랜드화**

□ **모집대상**: 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

* 신청자격 세부요건은 본 공고문의 "2.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(2p)" 참조

□ **지원내용**: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위한 상권 기획 및 교육· 컨설팅, 사업화 등 상권 창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.5억원 지원

사업명	동네상권발전소	동네상권컨설팅	로컬브랜드
최대 지원금액	최대 1억원	최대 2억원	최대 2.5억원
소관 기관	소상공인진흥공단		창업진흥원

* 상기 금액은 정부지원금 최대 지원금액으로 선정팀의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각 사업별 대응자금 구성 필요

□ **지원기간**: 선정 후 8개월 내외 ('23.4월~'23.12.31 (예정))

□ 선정규모 : 총 4개 과제

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- □ 신청자격: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표 기업이 되어 대표기업 포함 3개사 이상 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
 - **팀 구성** : 협업팀은 팀 대표기업과 팀원 기업으로 구분하며 사업 신청 및 평가 참여, 협약은 **팀 대표기업을 기준**으로 진행
 - 지리적 요건 : 브랜드 팀을 구성하는 모든 협업 기업(3개사 이상) 들은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함
 - * 단, 신청 지역에 대해 지역관리(area management)* 경험이 있는 대표기업의 경우 지리적 요건과 무관하게 팀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
 - ▶ 지역관리(Area Management) : 지역의 가치를 유지·향상시키기 위해 상인·주민·사업주·건물주 등이 동네 브랜드 개발, 지역자원 아카이빙, 안전·안심 지역 만들기, 커뮤니티 구축 등을 수행

구 분	신청 자격
필수 요건	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팀 구성 기업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함 * 1km 이내 밀집 미충족 시, 사업계획서 상 사유 명시 필수 (예시 : 지역관리 경험 등) 대표기업·팀원 기업 중 소상공인은 1개 기업 이상 필수 포함 ★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소상공인확인서'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 * 소상공인확인서 : 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·소상공인) 서류를 의미하며, 발급기준 및 발급 방법은 [별첨3], [별첨4] 참고
선택 요건 (하나 이상 충족)	• 대표자가 로컬 기업 2개 이상 영위 경험이 있는 기업 • 대표자가 지역 관리(Area Management) 경험이 있는 기업 * 선택요건 충족여부는 사업계획서(1. 대표기업 및 팀 역량)에 기술 필요(증빙 불필요)

- * 차년도 사업 신청 시 신청 지역을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
- □ 제외대상: 공고일 기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4 지원내용

□ **지원 내용**: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위한 상권 기획 및 교육·컨설팅, 사업화 등 협업에 소요되는 자금 <u>최대 5.5억원</u> 지원

사업명	분야	지원내용	지원금액
동네상권발전소	기획	상권 리서치 및 기획	1억원
동네상권컨설팅	교육·컨설팅	노포 연계 혁신 및 교육·컨설팅 프로그램 운영	2억원
로컬브랜드	사업화	연계 상품개발, 지재권 창출 등 상권 사업화	2.5억원

- 신청기업이 대표기업이 되어 3개사(신청기업 포함)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고 대표기업 주관으로 3개 지원사업 동시 수행
- * 사업별 필수과제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 등을 통해 수행 여부 확인 예정
- ① <u>동네상권발전소</u> : 로컬**상권 문제를 해결**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지원구분	지원 세부사항					
	<u>필수 과제</u>					
	① (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) 대표기업이 이해관계자와 함께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하고 협업체계 구축					
	② (동네상권 전략 수립)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로컬상권 경험 강화 전략 및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상권을 조직화					
상권기획 자금	③ (로컬 아카이빙) 지역 상권의 역사와 문화, 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 보존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권의 매력도 제고					
(최대 1억원)	◆ 선택 과제					
	① (동네상권 리빙랩) 지역구성원(상인, 주민, 지자체 등)이 함께 상권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연구·실행 과정 지원					
	* 예시) 로컬상권 문제 발견 및 해결방안 탐색, 로컬상권 활성화를 위한 H/W, S/W 등 지원					
	② (크리에이터 발굴)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출 소상공인 등 로컬상권 크리에이터 발굴					

* 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차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연계 지원 예정

- ② <u>동네상권 컨설팅</u> :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 - 선정팀, 지역상권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와 선정팀이 주체가 되어 보유역량 전수를 위한 과제로 구분하여 수행

지원구분	지원 세부사항
	◈ 필수 과제
교육 및	- (교육 및 컨설팅) 대표기업 포함 150개사 이상 교육 및 멘토링 진행
컨설팅 (최대 2억원)	① 선정팀, 지역 상권 구성원 등이 교육에 참여하거나 상권 활성화, 비즈니스모델, 홍보 등 전문분야 컨설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	② 보유 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해 신청팀이 주체가 되어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

③ <u>로컬브랜드 창출</u> : 기업간 **연계 아이템 개발** 및 사업화, 골목 상권 **BI 제작**, 환경개선·디자인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지원구분	지원 세부사항
	필수 과제
	① (연계 아이템 창출) 지역에 존재하는 유.무형의 인적.물적 자원을 활용한 연계 사업 아이템 개발 또는 기존 아이템의 확장
사업화 (최대 2.5억원)	② (공동 브랜드) 역사·문화 등의 지역 정체성(Identity)을 골목길에 담아 브랜드 개발 및 활용
	<u> 선택 과제</u>
	① (상권관리기구) 신청기업이 '대표'이자 '조직원'으로 참여하는 자율 상권 관리기구 출범 및 운영
	② (지역문제 해결) 상권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형 사업 수행

□ **사업비 집행**: 3개 **사업** 목적 (기획·교육·사업화)에 맞게 **자유롭게** 편성하되 동일한 과업을 2개 사업에 분할 집행 불가

◈ [참고] 대응자금 구성 주요 내용

1) 총사업비(7.2억원) 구성 : 정부지원금(5.5억원) 이하 + 대응자금(1.7억원) 이상

사업명	총 사업비	정부지원금	대응자금
동네상권발전소	2억원(100%)	1억원(50%) 이하	1억원(50%) 이상
동네상권 컨설팅	2억원(100%)	2억원(100%) 이하	-
로컬브랜드	3.2억원(100%)	2.5억원(80%) 이하	0.7억원(20%) 이상
합계	7.2억원	5.5억원 이하	1.7억원 이상

- 2) 대응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*로 구성하며, 지자체 예산(현물 포함)도 가능(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)
- * (현물) 대표자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

	비목	비목 정의	집행 기준
	재료비	• 교육 및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	
3개 사업 공통	외주용역비	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마케팅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	
	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사무실임대료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, 회계감사비, 법인설립비 등)	비목 간 한도 없음 (양산자금 사용불가)
	여비	• 타 지역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102 1,
	교육훈련비	•임직원이 상권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	
	전문가자문비	•교육 및 사업화를 위한 강의수당 및 멘토수당	
E 131 4 6 7 1	임차료	•교육 및 멘토링 활동을 위한 장소 등 임차 비용	-
동네상권 컨설팅	인건비	• 팀 소속직원이 교육 및 멘토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(대표자 지급 불가)	총 사업비 15% 미만
	기계장치 구입비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·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(공구·기구, SW 등)	
로컬 브랜드	무형자산 취득(특허권 등)	•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	비목 간 한도 없음 (양산자금
	광고선전비	• 제품과 기업, 상권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사용불가)
	창업활동비	• 골목 브랜딩(준비)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(증빙 불필요)	구성기업 당 월 100만원 한도

5

사업신청 · 접수

□ **신청기간**: 2023년 3월 6일(월)~3월 24일(금), 16:00 까지

◈ 신청·접수 마감 유의사항

- 1) 신청·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<u>마감일 2~3일</u> 이전에 '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2)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** ("제출완료" 후에는 정보 수정 불가, 신청취소 후 재신청 필요)
- 3)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
- 4) <u>신청·접수 마감일 16:00 정각에 접수가 마감</u>되며, 16: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(1단계(약관동의) 이상 저장 과제)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작성항목 수정, 사업 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. 마감시간 16: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

□ **신청방법**: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◈ 신청 시 유의사항

- 1) 사업 신청은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신청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
- 2) 신청접수 시, K-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[©]기업인증 및 [©]개인인증 등을 실시하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
- * 기업인증: ①공동인증서(기업용) 또는 ②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, 신청마감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(기업 사정에 따라 3일 내외 소요될 수 있음)
- ** **개인인증**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(개인에 따라 3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), 특히 외국인, 미성년, 개명 등은 사전인증 필수
- *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[별점 1] 사업 신청 매뉴얼' 참조

□ 제출서류

○ **사업계획서** (가점 및 팀원 기업 증빙서류 포함)

	구분	제출서류 목록	
대표기업		■ 사업계획서 [별첨2] 참조	
구성기업 중 1개 이상		■ 소상공인확인서	
		*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·소상공인)'	
대표· 팀원	사업자	■ (개인) 사업자등록증 또는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	
공통 동의서		■ 동의서 등 [별첨2] 참조	
해당 시		■ 법원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결정문 등	

◈ 제출서류 유의사항

- 1)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**게시된 양식을 사용**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- 2) 사업계획서는 팀당 1부 제출이며, 소상공인확인서, **개인사업자·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해당 기업 모두가 제출**해야 함
- 3) <u>가점 증빙서류 등</u>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, **미제출 시 불인정**
- 4)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추후 검증을 위해 최신본을 요청할 수 있음
- 5) 소상공인확인서는 '(소기업·소상공인)'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,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/cm/sv/CSV001R0.do)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, 필요서류 구비완료까지 5일 내외 소요될 수 있으므로, 미리 확인 필수

6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절차 : 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발표평가)를 통해 최종선정

① 서류 평가

선정 규모 (4개팀)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

② 발표평가

20분 발표, 10분 이상 질의응답

③ 최종선정

'발표평가(100점)'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(단, 60점 미만 제외)

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(창업진흥원·소상공인진흥공단)하며,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□ 평가 방법

○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(가점 반영)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(선정규모의 1.5~2배수 내외) 선정

<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>

세부 가점 항목	점수
1) 청년 소상공인 ■ 팀의 과반수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경우(대표자 기준)	1점
2) 제조업 포함 ■ 대표기업 및 팀원기업 중 제조업이 1개사 이상 포함된 경우(사업자등록증 기준)	1점

- *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,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
- ** 청년 가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자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

- **발표평가** : 대표자 참석 및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이해도, 골목상권 창출 가능성 등에 대해 심층 평가할 예정
 - * 발표평가(PT 양식 등)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,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,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○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평가배점의 60%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점수과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

<	선정	평가	평가지표	>

구 분	평가항목	세부내용		
대표기업 및 팀 역량	사업 이해도(5)	• 그간 사업 경험 및 과제 제안 동기, 지원 필요성		
		• 지역 이해도 및 상권 현황·특성		
	팀 구성 계획 (10)	• 대표기업 및 팀원 기업의 역할 및 역량, 잠재력	10	
		• 구성원 간 연계 계획의 적절성 및 시너지 창출방안		
사업수행 계획	상권 기획 (20)	• 동네상권 문제점 분석 및 개선전략 수립 과정의 구체성		
		• 로컬 아카이빙 구축 및 보존·관리계획의 적절성		
	역량 강화 (20)	• 동네상권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계획의 적절성		
		• 교육 및 컨설팅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		
	상권 창출 (30)	• 골목상권 창출 및 브랜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	
		• 수익모델·방문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		
	사업비 관리(5)	• 예산 활용계획의 적절성·구체성		
지속가능성	중장기 계획	• 골목상권 브랜드 정부지원 이후 장기적 지속 가능 전략		
	(10)	• 자율 상권 관리기구 구축 및 운영 전략	10	

□ 최종선정

-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최종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정부지원금 배정
 -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배정할 수 있으며,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음
 - **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추진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□ 사리 도요되었		※ <u>수신일성은 내내·외</u> /	나장!	<u>에 의애 먼경될 수 있음</u>	
공 고		신청ㆍ접수		요건검토 및 선정평가	
K-Startup 누리집(홈페이지)		K-Startup 누리집(홈페이지)		전담기관	
′23.2.24.(금)		'23.3.6(월) ~ 3.24.(금), 16시까지	•	'23.3~4월 중	
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		협약 준비		지원대상 선정 공지	
전담기관-(주관기관)- 선정팀(대표기업)		수정사업계획서 제출		K-Startup 누리집(홈페이지)	
 '23.4~5월 중		′23.4월		′23.4월	
사업 수행		중간(수시) 보고 및 점검		최종보고 및 점검	
3개 사업 각각 추진		전담기관, 선정팀	D	전담기관, 선정팀	
'23.5월~'23.12월		'23.8~9월 중	-	'24.1월 중	

* 전담기관 : 창업진흥원, 소상공인진흥공단

유의사항

- ◈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 - ① 본 사업은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"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"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 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<u>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</u>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(창업자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
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
 수 있음
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사업별 세부관리기준, 전담기관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소상공인·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집
 -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, 공동 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, 선정취소,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건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동 사업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K-Startup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-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신청을 완료를 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 참여가 가능
-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한글(hwp)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*
 - *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대표기업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 하여야 함
 - *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대표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
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(통보일 기산, 휴일 포함)에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전담기관으로 신청 가능
- 전담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 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창업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선정된 기업의 사업비 횡령,
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 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- 지원사업 간 비목이 겹치는 항목에 대해 동일한 증빙으로 1개 사업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, 중복 집행 시 사업비 횡령, 편취 등으로 간주 될 수 있음
- 동 사업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정부지원금 배정은 불가하며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지급됨
 - 정부지원금은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, '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'을 통해 관리 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중간·최종 점검 시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 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, 협약 해약,
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8 문의처

구분	담당기관	연락처	
신청·접수 시스템 (K-Startup) 문의	중소기업 통합 콜센터	국번없이 1357	
동네상권발전소 사업문의	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상권실	(042) 363 - 7607, 7605	
동네상권컨설팅 사업문의	소상공인진흥공단 창업지원실	(042) 363 - 7732, 7731	
로컬브랜드 사업문의	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	(044) 410 - 1885, 1927	

참 고

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

[정의] '지역의 자연환경,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'

- ·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
- ① 지역가치, ② 로컬푸드, ③ 지역기반제조, ④ 지역특화관광, ⑤ 거점브랜드, ⑥ 디지털문화체험, ⑦ 자연친화활동

<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>



[요건]

- ① 지역의 유·무형자원(역사전통, 문화예술, 자연생태, 생활문화, 지역특산물 등)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
- ②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창업하는 자
- ③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나타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

<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>

구분	내용
지역가치	·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 · (기대효과)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,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
로컬푸드	· 지역의 특산물,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· (기대효과)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,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, 종자개발부터 유통·제조·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
지역기반제조	·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· (기대효과) 수공업과 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,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
지역특화관광	· 관광자원(자연환경, 여행지 등)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·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
	· (기대효과)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,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
거점브랜드	·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등 지역거점 역할 · 지역성과 희소성 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
	· (기대효과)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,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(Meaning Out)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
디지털 문화체험	·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
	· (기대효과) AR,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
자연친화활동	·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(바다, 산, 강 등)에서 진행되는 서핑,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 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
	· (기대효과) 집단적 활동(테마파크 등)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(캠핑, 글램핑 등)의 수요증가 예상